

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개정 안내

□ 개정 배경

- 사업주·대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접 조사하는 이른바 ‘셀프조사’ 구조에 대한 논란 보도* 등

* ‘음료 횡령’ 몰린 알바 괴롭힘, 가해 점주에 ‘셀프조사’ 맡긴 노동부(‘26.4월, KBS 등 다수)

-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해 사업주·사업경영담당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, 감독관이 직접 충분히 선제조사하고, 이를 기초로 객관적 조사 지도하도록 사건처리 방식 구체화할 필요

□ 주요 개정내용

- 사업주·사업경영담당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*된 사건의 경우, 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 실시 추가

* 10인 미만 등 소규모사업장이나 괴롭힘 조사 및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사업장 등에는 사업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중립적, 객관적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움

- 감독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 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지도·확인

□ 주요 개정사항 요약표

연번	개정 항목	개정 내용	비고
1	▶ 권리구제 지원팀 안내 등	• 사업주·사업경영담당자(대표이사 등)가 행위자인 경우, 신고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 추가	• 지침 13p
2	▶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처리	•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(대표이사 등)의 괴롭힘에 대한 신고의 경우, 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 실시 및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 조사 지도·확인 추가	• 지침 29p, 35p, 106p

참고 지침 전후 비교표

쪽	현행	개정
13	○ (법제도 안내) - 사용자에게 신고하였으나 사용자가 조사·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의 조사·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	○ (법제도 안내) - 사업주·사업경영담당자(대표이사 등)가 행위자인 경우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였으나 사용자가 조사·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자의 조사·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
17	② (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) "7.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(29page)"와 같이 사업장 내 자체조사 시정지도와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병행 <참고3> 감독관 직접조사와 사업장 자체 조사를 병행하는 이유	② (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) "7.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(29p)"와 같이 처리 <참고.3> 감독관이 직접 조사 함에도 사업장 자체조사 지도·지시하는 이유
18	→ (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) "7.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(29page)"와 같이 사업장 내 자체조사 시정지시와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병행	→ (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) "7.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(29p)"와 같이 처리
29	□ (사건처리)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및 자체조사 지도·지시 병행 ○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도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조사·조치 의무가 있으므로, 사업장 내 자체조사토록 지도·지시 - 다만,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·조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 병행	□ (사건처리)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조사·조치 의무가 있으므로,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조사·조치하여야 함 - 다만, 행위자가 사업주·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, 조사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,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객관적 조사하도록 지도·확인
35	- 신설	□ (공통 원칙) - 다만, 행위자가 사업주·사업경영담당자인 경우, 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 조사 지도(29p)
92	- 신설	□ (시정지도 양식) - 한편,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2차 가해,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06	□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(친족인 근로자 포함)가 행위자인 사건의 절차 ○ 사업장에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을 지도 - 동시에 담당 감독관이 진정한, 피진정한, 목격자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,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직접 조사·판단	□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(친족인 근로자 포함)가 행위자인 사건의 절차 ○ 담당 감독관이 선제적으로 당사자 조사 등을 실시하고,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객관적 조사 지도·확인 - 이후 사업장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을 지도